

	<b>보 도 참 고</b>			 
		<b>보도</b>	<b>배포 후 즉시</b>	
<b>책 임 자</b>	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장 신 장 수(02-2100-2620)	<b>담 당 자</b>	김 영 민 사무관(02-2100-2621) 장 지 원 사무관(02-2100-2696)	
	금감원 디지털금융감독국장 김 병 칠(02-3145-7120)		윤 동 진 팀 장 (02-3145-7147)	

## 제 목 : 「신용정보업 감독규정」 개정안 행정예고

### 1 추진배경

- 그간 수차례 전문가 자문회의 및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보완필요성이 제기된 사항을 반영하여,
  - 정보제공 범위에 은행계좌 등의 적요정보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한편,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적요정보 및 미성년자 정보 제공시 소비자 정보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행위규칙을 강화하였습니다.

### 2 주요 개정내용

#### (가)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에 적요정보 포함 (안 제3조의3)

- 소비자 편의\* 등을 감안하여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주체의 신용정보 이동권 행사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에 은행계좌 등의 적요정보를 명시적으로 포함했습니다. (※ [참고] '21.7.8일자 보도자료)

\* 적요정보 미제공시 구체적인 입출금 내역이 포함된 계좌통합조회 서비스 및 수입·지출관리 서비스 등이 제한

- ① 신용정보주체의 계좌에 기록된 이체·결제내역 및 거래 상대방
- ② 신용정보주체 및 거래상대방이 금융거래 과정에서 신용정보주체의 계좌에 기록하거나 기록요청한 정보 등

## [나]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행위규칙 강화(안 제23조)

-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을 위해 적요정보와 미성년자 정보의 마케팅 이용, 제3자 제공 등을 금지하고, 정보 이용 목적을 신용정보주체 본인 조회·분석 목적으로 제한하였습니다.
- 아울러, 미성년자의 경우 한층 더 두터운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,
  -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송요구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,
  - 필요최소한의 정보 수집 등을 위하여 정보수집 범위를 미성년자가 주로 사용하는 금융상품\*에 한정하였습니다.

\* 수시입출금 계좌, 체크·선불카드, 선불충전금 등

### 3 향후 일정

- 동 감독규정개정안은 행정예고(~'21.11. 22.) 등을 거쳐 '22.1.1일 시행 예정입니다.

 공공누리 공공지착물 자유이용허락	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<a href="http://www.fsc.go.kr">http://www.fsc.go.kr</a>	금융위원회 대변인 pfsc@korea.kr	 합법관리청 콜센터
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**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**